

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(앞 쪽) 30일
신청인	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		
	신청품목			주 생산품목	
	모델명			안전인증 · 안전확인번호	
	소재지	본사 (전화번호 :)			
		공장 (전화번호 :)			
직원 수(명)			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2. 제품 소개서 3.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안 내 사 항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